

등록번호	감사담당관-1059
등록일자	2019. 02. 08
결재일자	2019. 02. 08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행정사무관	감사담당관	감사관
박원제	박광현	김종학	전결 2019. 2. 8. 김용승
협조자	규제개혁법무담당관		김명준

행정규칙(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2건) 개정	주요 검토사항	
	정 책 중 요 도	보통
	민원 · 갈등 가능성	낮음
	기관간 이견가능성	낮음
	홍보대책 필요성 (홈페이지 등록 필요성)	낮음
	서민생활 관련성	낮음

공익신고자의 신고 편의 제고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「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·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 과 「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 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국 토 교 통 부 감 사 담 당 관

행정규칙(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 2건) 일부개정

I. 개정배경
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(훈령·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에 의거 **존속기한 설정**
 - 「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 , 「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**신고서 민원실 비치·활용**,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**문맹자 등이 신고하는 방법**을 규정하여 **공익신고자 편의 제고**
 - 「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

II. 주요 개정내용

「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

가. 규정의 재검토키한을 3년(2022년 6월 30일)으로 설정(제22조)

「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

가. 공익신고서 비치 및 문맹자 등의 신고방법 마련(안 제10조의2 신설)

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,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 공익신고자를 위하여 신고서의 대리 작성 근거를 마련함

나. 법률에서 정한 신고내용 및 벌칙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(안 별지 제1·2·4·5·7·8·9·10호 서식 개정)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서 공익신고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서,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, 대표 신고자 선정서 등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, 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등에 강화된 현행 벌칙 규정을 반영함

다.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3년(2022년 6월 30일)으로 설정(안 제34조 신설)

Ⅲ. 향후계획

- 훈련번호 채번 등 절차를 거쳐 개정 및 시행
 -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개정내용 통보 및 철저 이행요청

붙임 : 행정규칙 개정안 각 1부. 끝.